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58 발의연월일: 2022. 11. 30.

발 의 자:임이자·강대식·김용판

박대수 · 박성민 · 백종헌

양금희 • 이채익 • 지성호

최영희 · 하영제 의원

(11인)

제안이유

시행예정 법률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그러나, 시행예정 시기까지 전기차량 외에 경유차를 대체할 차종이 출시될 계획이 없고, 전기차량이 반도체 수급 난으로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택배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

한편,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출력이 우수한 LPG 신모델 차량이 20 23년 12월 출시되어 경유차의 대체자동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 기하려는 것임. 다만, 경유차 사용제한에 관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하여금 경유차의 제작·수입을 중단하거나 대체차량 을 우선 출고하도록 제작사의 협조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되어 온 자동차의소유자가 계속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하여금 특정 용도 경유 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우선 출고하는 협조의무를 규정함(안 제28 조).
- 나.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일을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 다. 이 법 시행 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되어 온 자동차의 소유자가 계속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법률 제 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제작 중단 또는 대체 자동차 우선 출고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4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단,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자동차의 사용 제한) ① (현행 자동차의 사용 제한) (생 략)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 <신 설> 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 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 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제작 중단 또는 대체 자동차 우선 출 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제1조(시행일)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 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

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305 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 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 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 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 를 하려는 경우

2. ~ 4. (생 략) ② (생략)

	<u>2024년</u>
1월 1일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 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 ----- 경우(단,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 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